

'19년 용자사업 안내

1 사업개요

사업장의 안전·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조건의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함

2 지원대상

- ① 근로자 고용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③ 보험료 체납하지 않고
④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 합계 100억 이하인 사업장

< 지원대상 여부 확인방법 >

① 산재보험가입 및 산재보험료 완납

☞ 제출서류 : 산재보험완납증명서(자금신청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)

② 근로자 고용

☞ 제출서류 :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자금신청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)

※ 산재보험 자격취득자 1명이상 있어야 함

③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 이하

☞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(<http://sims.go.kr>)에서 '14~'18년까지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금액이 100억 이하

3 용자한도액과 용자조건

- 지원한도 : 사업장 당 10억원
- 지원조건 : 금리 1.5% (3년 거치, 7년 분할상환)

※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등은 규정 변경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4 용자 주요 대상품

● 주요 용자 대상품

가. 법 제33조 및 영 제27조(영 별표7)에서 정한 “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

		
금속절단기	지게차	포장기계(랩핑기)

방호장치 필수항목	지게차 종류		
	좌식지게차	캐빈형 지게차	입식지게차
전조등, 후미등	○	○	○
후진경보음 (경광등)	○	○	○
후방접근 감지센서	○	○	X
후방카메라	X	○	X

※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적재하중 3톤 미만으로, 후방 충돌방지장치 또는 설비를 부착한 지게차에 한함(위 방호장치 필수항목 참조)

나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“안전인증” 대상 기계·기구 및 설비(KCs)

		
프레스	절곡기, 전단기	사출성형기

- 다.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“안전인증”을 받은 기계·기구 및 설비(S마크 인증)
- 라.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“자율안전확인” 대상 기계·기구 및 설비(KCs)



- 마. 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93조(별표11의4)에서 정한 “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”에 작업자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체·자동화설비



- ※ 해당 자료는 용자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자료로 용자사업 관련 운영규정 및 규칙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
- ※ 지원 조건 및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사업안내 → 산업안전 →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→ 사업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